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3. 11. 16.
- 회부 및 상정일자 : 2023. 11. 27.(보류)
- 재상정일자 : 2024. 1. 9.

### 2. 제안이유

-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건설되는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총칙(안 제1조 ~ 3조)
  -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 제12조)
  - 운영 및 위탁, 위탁 절차 및 기간, 위탁료 및 사용료, 관리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보험 가입, 배상 책임, 관리비 등의 지원

- 시설의 이용(안 제13조 ~ 제15조)
  -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이용의 제한
- 운영 위원회(안 제16조 ~ 제22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무, 위촉 해제 등, 위원회의 기능, 회의 및 의결 등
- 지도 감독 및 보칙(안 제23조 ~ 제24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지방자치 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공유재산 관리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수질 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건설되는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운영) 제2항제2호는 제2항제1호 규정이 구체화된 내용으로써, 제1호의 내용이 제2호를 포함하고 있어 제2호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2항제2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 안 제5조(위탁절차) 제1항에서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 다만, 수의의 경우 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고 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조문상 잘못 규정한 것이고, 제5조 조문은 내용을 알기 쉽게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관리위탁 기간) 제2항 및 제7조(사용료) 제4항은 공유재산 관리의 일반조례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달리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관리위탁 기간)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

<p>제7조(위탁료 및 사용료) ②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유통센터 평정가액의 <u>1,000분의 10 이상</u>으로 한다.</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b>1,000분의 25 이상</b>으로 한다.</p> <p>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p>
---	--

- 안 제4장(운영 위원회)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센터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 시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의무규정이 아닌 해당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조례안의 내용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수정권고안】

제 정 안	수정권고안
<p>제4조(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p>  <p>제5조(위탁 절차) ① 유통센터를 관리 위탁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의 경우 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운영 위원회</p> <p>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인 농정과장으로</p>	<p>제4조(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1. (제정안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5조(위탁 절차) ① ----- -----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 ----- ----- -----</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lt;삭 제&gt;</p>

제 정 안	수정권고안
<p>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유통과장, 축산농기계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창군 농업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임원</li> <li>2. 농산물 가공 분야 전문가</li> <li>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식품산업팀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li> </ol> <p>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제 정 안	수정권고안
<p>입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p> <p>2.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p> <p>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p> <p>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관리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p> <p>2.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p> <p>3.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4.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5.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21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22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여부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

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제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